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387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38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496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E

변론 종결 2015. 5. 21.

판결 선고 2015. 6. 2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4965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3. 9. 30. 이루어진 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3억원의 증여 또는 변제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체결일: 2012. 8. 1., 계약명: 선급금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 한국제강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2. 8. 10.부터 2013. 10. 31.1) 까지, 보험가입금액 3억원

② 계약체결일: 2012. 10. 17., 계약명: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 대한제강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2. 10. 17.부터 2013. 10. 16.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원

③ 계약체결일: 2012. 11. 7., 계약명: 선급금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 대한제강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2. 11. 21.부터 2013. 11. 20.까지, 보험가입금액 8억원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10. 28. 한국제강 주식회사로부터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①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아 2013. 11. 22. 264,582,57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0. 15. 및 2013. 10. 21. 대한제강 주식회사로부터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②, ③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받아, 2013. 12. 20. 148,439,769원,

628,699,128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A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

피고는 A의 대표이사인 C의 누나인데, A 또는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

금전거래 내역표

1	2010. 5. 26.	피고	A	1억원
2	2010. 7. 29.	H(피고의 남편)	C	2,000만원
3	2010. 8. 20.	H(피고의 남편)	C	8,000만원
4	2010. 10. 18.	피고	C	297,320,310원
5	2010. 11. 29.	A	피고	200만원
6	2010. 12. 28.	C	피고	40만원
7	2011. 1. 23.	A	피고	100만원
8	2011. 1. 31.	C	피고	140만원
9	2011. 3. 19.	C	피고	250만원
10	2011. 12. 16.	피고	C	149,065,380원
11	2012. 1. 초순	C	피고	3회에 걸쳐 1억 5천만원
12	2013. 9. 30.	A	피고	3억원

* 이하 순번 12 기재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한편 A 대표이사 C는 그 명의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에서, 순번 2 기재 2,000만원을 송금받은 날, 순번 3 기재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송금받은 날, 순번 4 기재 약 3억원 중 1억원은 송금받은 날, 7,000만원은 송금받은 다음날, 각 A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순번 10 기재 약 1억 5천만원 역시 송금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부분 A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A 대표이사 C는, 순번 1 내지 3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 2010. 8. 20.자로 A가 공장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2억원(그때까지 받은 돈, 즉 순번 1 내지 3 기재 송금액의 합계액)을 차용하였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순번 4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 2010. 10. 18.자로 같은 취지로 3억원을 A가 차용하였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순번 4, 10 기재 송금을 위하여, 그 소유인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데,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송금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2013. 9. 30.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한 거래관계에 대한 소명을 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그의 동생이자 A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공장신축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와 같이 송금을 해 주었다가 그 변제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에서 3억원을 송금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 7천만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라. A의 무자력

A가 2013. 9. 30. 피고에게 3억원을 송금할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 소유인 경남 창원군 F 소재 공장의 감정평가액은 2,321,830,000원인데 반하여, 경매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청구금액은 2,696,933,00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3, 14, 16 내지 18호증, 을바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송금은 무자력이던 A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설령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대표이사인 C와 그의 누나인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송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A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동생인 C로부터 A의 운영자금 유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A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는 A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A와 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해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그 동생인 C로부터 A의 공장운영자금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을 A 또는 그 대표이사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송금한 돈 대부분은 송금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A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자 역시 금전거래 내역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A 또는 C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는바, A 대표이사인 C가 계좌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갑 제17호증의 1(회신서)에 기재된 피고의 회신 역시 송금액을 받은 계좌의 명의를 기준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 역시 C와 A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A 대표이사 C는 금전거래 내역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 2010. 8. 20.자로 2억원, 같은 순번 4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 2010. 10. 18.자로 3억원을 A가 차용하였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이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A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송금 당시 A가 채무초과였던 사실, A 대표이사인 C와 피고가 남매지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A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이 사건 송금 당시 A의 재산상태(그 소유 공장의 감정평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3억원을 초과한다)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A가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이혁

판사박찬호

1) 당초 보험기간은 2013. 8. 10.까지였으나, 한국제강 주식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험기간도 연장되었다.